2014년 1월 15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월14일(화) 12:00 이후 보도 가능
www.smba.go.kr

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

보 도 자 료

성장 징검다리 중소기업청 Small &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

• 문의 : 창업진흥과장 김성섭(042-481-4407), 사무관 박은주(042-481-4409)
벤처투자과장 박종찬(042-481-4416), 사무관 강기삼(042-481-4422)

벤처투자 규제 완화 및 대학의 청년창업 지원 확대
–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 개정 –

□ 중소기업청(청장 한정화)는 창조경제 핵심인 **벤처·창업 투자와 창업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및 대학을 통한 청년창업 촉진**을 위해 **지난 6월 개정된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의 후속조치로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을 개정**하였다고 밝혔음.

□ 이번에 개정된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의 주요 내용을 보면

○ **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 이행과 관련한 등록취소 요건을 완화**하고, **대주주의 "사회적 신용" 요건을 신설**하는 등 창업투자회사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,

○ 법령에 따라 **창업기업이 부담하는 11종의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신청 및 처리절차를 간소화**하는 한편, **"창업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제도"를 새로 도입**하고, **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국·공유재산 사용료를 재산가액의 1/100으로 감면**하는 등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으며,

○ 아울러 **대학 내 "창업지원 전담조직"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**하여 대학이 청년창업의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음

□ 중소기업청은 이번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**벤처창업 투자환경 개선과 함께 창업기업의 부담 완화, 대학의 청년창업 기지화 등을 통해 “창조형 청년창업”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**가 되었다고 밝혔음

* 첨부 :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

< 첨부 >

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

① 창업투자회사 등록 취소 요건 완화

○ 종전 창업투자회사는 등록후 1년간 **창업자, 벤처기업 등 투자 실적이 없을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도록 규정**하고 있으나,

- 법정 **투자의무*를 이행하고 창업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활동을 지속**할 경우, 예외적으로 등록이 취소되지 않도록 규정

* 창업자, 벤처기업 등에 신주 방식으로 자본금의 40% 이상을 투자

② 창업투자회사 전문인력 인정범위 확대

○ 벤처특별법상 **유한회사도 창업투자회사와 유사하게** 창업투자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 가능*

* 근거법령 : 벤특법 제4조의3제1항, 창업지원법 제20조제1항제1호

○ 따라서 창업투자회사 투자 심사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**유한회사에서 2년 이상 투자심사 경력을 갖춘 경우 창업투자회사 전문인력으로 인정**

③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요건 신설

○ 지난 6월 창업지원법이 개정되어 창업투자회사가 **대주주로 인해 불법행위와 연루되는 것을 방지**하기 위해, 창업투자회사 대주주의 “사회적 신용” 요건을 규정

○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**금융 관련 법령 위반 등 3가지 사항을 창업투자회사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으로 신설**

< 창업투자회사 사회적 신용 요건 >

1. 최근 3년간 법, 제2항에 따른 금융 관련 법령,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조세범 처벌법」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. 다만, 법 제49조 또는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.
2.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
3. 최근 5년간 「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또는 제2항에 따른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·인가·등록 등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

④ 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의 대상을 새로 규정

○ 종전에는 창업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한 후 사업계획의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사업계획이 취소되어야 했으나,

- 지난 6월 창업지원법 개정을 통해 사업계획의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승인을 허용하여 사업계획의 취소 없이 창업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개선

○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계획승인의 변경 대상*을 새로 규정

* **사업자**(법 제37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경우로 한정한다), **업종**, **공장용지면적**, **공장건축면적 및 부대시설면적**(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2호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의 범위에서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)

⑤ 부담금 면제 신청 및 관련 자료의 제출 등

○ 창업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기업에 대한 각종 부담금* 면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

* 농지전용부담금, 대체초지 조성 부담금, 전기사업법상 부담금 등 11종

- 창업기업이 **부담금 면제와 관련하여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를 규정하고*** **절차를 간소화****하는 한편, 부담금 면제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**14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의무화**

* 1. 개인사업자 : 업종 추가 후 2분기 동안의 매출신고서(업종을 추가 시)
2. 법인의 경우 : 사업의 분리에 관한 계약서 및 창업일이 속한 달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(사업의 분리 시), 업종 추가 후 2분기 동안의 매출신고서(업종 추가 시)

** 제외서류 : 사업자등록증,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), 국세 납세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(법인의 경우 대표이사)

⑥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업무 범위

○ 지난 6월 창업지원법 개정으로 대학의 창업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

○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업무를 상세히 규정하여 대학 내의 창업지원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

* 대학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업무 : 대학 내 창업지원업무의 총괄 기획·조정, 기업가정신 및 창업 교육, 대학 내 창업보육센터 등 창업지원기구 관리, 해당 대학 내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, 실험실공장과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한 자금 등 지원, 대학 간 창업지원사업의 연계 및 조정 등

⑦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국·공유재산 사용료 감면

○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이 사용하는 국·공유재산 사용료를 해당재산 평정가액의 1/100로 규정

* 국·공유재산의 사용료는 일반적으로 재산가액의 5/100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박은주 사무관(☎ 042-481-4409), 벤처투자과 강기삼 사무관(☎ 042-481-442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